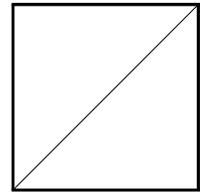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4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을 개정(20.9.25.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IAS 16 문단 17(5)1)의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혼란이 있었음
 - 순매각금액이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를 의미하는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모든 재화를 의미하는지 불명확
 - 광업 및 석유화학 등의 일부 산업의 경우, 이로 인한 회계처리 영향이 크다는 이슈가 제기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당기손익 인식

- (개정내용)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문단 17(5)),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등의 당기손익 인식(문단 20A) 명확화

1)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현행)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시험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함(문단 17(5))
- (개정안)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2)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한 공시**

- (개정내용)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개정함에 따라(문단 20A), 이에 대한 공시 규정을 마련함
 -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과 이 금액이 포함된 계정을 공시함(문단 74A)
 -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시킨 관련 매각금액과 원가의 금액 및 그 계정을 공시
 - 성과와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나타내어,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 외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구분 파악 가능

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함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되는 재화의 매각금액이 유의적인 광업,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고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므로, 이를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가 충실하게 표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2020. 7. 3.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0. 7. 8. ~ 2020. 8. 10.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0. 9. 25.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보고(2020.12.16.)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9. 25.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is publish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문단 17과 74가 개정되었고, 문단 20A, 74A, 80D, 81N이 추가되었다. 문단 74(4)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문단 74A(1)로 이동되었다.

인식시점의 측정

원가 구성요소

-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20A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공시

- 74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1)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 (2)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 (3)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4)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수취한 보상금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74A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액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 (2) 생산된 재화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와 관련된 금액으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 그리고 그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별 항목

경과규정

80D 2020년 9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와 7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이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 누적 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시행일

81N 2020년 O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 74A, 및 8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2020.9.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IASB(또는 IASC)가 제정·개정한 IAS 16에 대응하는 기준서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IAS 16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제정·개정하면서 IAS 16에 관한 IASB(또는 IASC)의 결론도출근거를 고려하였다. 참조하기 위해 첨부한 IASB(또는 IASC)의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대응관계와 IAS 16의 결론도출근거를 바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
IFRS 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2	Inventories	제1002호	재고자산
IAS 7	Cash Flow Statements	제1007호	현금흐름표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17	Leases	제1017호	리스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IAS 23	Borrowing Costs	제1023호	차입원가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IAS 41	Agriculture	제1041호	농림어업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 - Non-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SIC 21	Income Taxes - 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SIC 32	Intangible Assets - Web Site Costs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6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16A~BC16R을 추가했다. BC36A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36B~BC36D를 추가했다.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2020년 개정)

배경

- BC16A 2020년 개정 전 문단 17(5)에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되,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순매각금액을 차감하도록 명시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 (1) 문단 17(5)에서 규정한 매각금액이 오직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에만 관련되는 것인지
 - (2) 시험원가를 초과하는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 BC16B IASB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별로 문단 17(5)의 요구사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오직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 따른 매각금액만을 차감하였고, 다른 기업들은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사용 가능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매각금액을 차감하였다. 일부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된 매각금액은 유의적이고 시험원가를 초과할 수도 있다.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당기손익 인식

- BC16C 문단 BC16B에서 언급하는 조사결과를 고려한 후,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BC16D IASB는 이 개정내용으로 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 항목들은 일정 기간의 기업 성과를 반영하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BC16E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와 상계하도록 한 종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종전의 요구사항은 다음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1) 기업의 성과. 매각금액과 자산의 원가를 상계하면 일정 기간의 수익(revenue)[또는 이익(income)]이 과소계상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긴 경우에 기업의 성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그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금액이 감소된다.
 - (2) 유형자산의 원가.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원가를 과소 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써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지표(예: 자산수익률)의 유용성이 감소될 수 있다.

BC16F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판매금액 [그리고 관련된 이익(margin)]이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1) 이 판매금액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이며 반드시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은 아니다.
- (2) 생산된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BC16G 그러나 IASB는 그 매각금액이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강력한 논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손익계산서는,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밖의 수익이나 비용 항목들을 포함한다.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나타내는 금액을 보고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확인가치를 가질 것이다. 문단 74A(2)의 공시 요구사항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문단 BC16L~BC16M 참조).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

BC16H 외부검토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다.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

였다. 그들은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견제출자들은 요구사항을 얼마나 자세히 기술하여야 하느냐에 견해를 달리했다. 일부는 IASB가 높은 수준에서 원칙만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세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BC16I 이러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IAS 2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1) IAS 2는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가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정하고 있다.
- (2) 만약 기업이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미 원가를 측정할 때 IAS 2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된 재화는 IAS 2의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결과인지와 무관하게, 생산된 재화의 원가에 대하여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BC16J 또한,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예: 낭비된 비정상 재료 원가와 노무원가의 측정, 결합제품에 대한 배분,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에 부수적인 영업 관련 원가의 측정)하는 데 수반되는 판단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IAS 2와 그 밖의 IFRS를 적용할 때 이미 요구되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BC16K IASB는 몇몇 기업의 경우, 이 개정내용을 새로 적용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IAS 2를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제공되

는 정보의 유용성보다 더 많은 원가를 부담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표시와 공시

- BC16L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단 74A(2)의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식별하게 하고, 이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 BC16M IASB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IFRS 15와 IAS 2의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러한 판매에서 생기는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해서는 유사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BC16N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정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IAS 1을 비롯하여 다른 IFRS에서 이미 추정과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IASB는 이와 관련하여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BC16O IAS 1이 이미 예를 들면 다음에 대한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 (1) 수익과 비용의 상계
 - (2)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수익과 비용의 표시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시험'의 의미

- BC16P 문단 20에서는 유형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기업이 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고, 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사항을 고려하였다. 일부 기업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유의적 매각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자산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매각금액이 감소되어 매각금액의 인식방법의 변동 없이 문단 BC16B에서 식별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 BC16Q IASB는 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6을 개정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좁은 범위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유형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IASB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 BC16R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문단 17의 '시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업이 유형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명확화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할 때 기업은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을 평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유형자산이 경영자가 최초로 예상한 영업이익수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이 자산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2020년 개정)

BC36B 2020년 개정은 주로 광업 및 석유화학과 같은 몇몇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IASB는 IAS 8에 불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BC36C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여러 해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자산에 소급하여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IASB는 문단 80D의 경과규정은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일관성을 증진시키지만,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의 수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BC36D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을 위한 경과규정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1) IFRS 1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제공한다. 면제 규정은 최초채택기업이 IAS 16을 참조하지 않고 유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 최초채택기업이 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IA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IAS 16의 요구사항 중 한 가지 측면에만 관련되는 예외 규정이나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효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본문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Amendments to IAS 16</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aragraphs 17 and 74 are amended; paragraphs 20A, 74A, 80D and 81N are added. The requirements formerly in paragraph 74(d) have not been amended but have been moved to paragraph 74A(a).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text is underlined.</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17과 74가 개정되었고, 문단 20A, 74A, 80D, 81N이 추가되었다. 문단 74(4)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문단 74A(1)로 이동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p> </div>
<p>Measurement at recognition</p> <p>Elements of cost</p> <p>...</p> <p>17 Examples of directly attributable costs are:</p> <p>...</p> <p>(e) <u>costs of testing whether the asset is functioning properly (ie assessing whether the technical and physical performance of the asset is such that it is capable of being used in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rental to others, or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fter deducting the net proceeds from selling any items produced while bringing the asset to that location and condition (such as samples</u></p>	<p>인식시점의 측정</p> <p>원가의 구성요소</p> <p>...</p> <p>17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p> <p>...</p> <p>(5) <u>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사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u></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produced when testing equipment); and</p> <p>...</p>	<p>...</p>
<p><u>20A</u> <u>Items may be produced while bringing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o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it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such as samples produced when testing whether the asset is functioning properly). An entity recognises the proceeds from selling any such items, and the cost of those items, in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Standards. The entity measures the cost of those items applying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of IAS 2.</u></p>	<p><u>20A</u> <u>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u></p>
<p>Disclosure</p> <p>74 The financial statements shall also disclose:</p> <p>...</p> <p>(b) the amount of expenditures recognised in the carrying amoun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 the course of its construction; <u>and</u></p> <p>(c) the amount of contractual commitments for the acquisi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u>and</u></p> <p>(d) if it is not disclosed separately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e amount of</p>	<p>공시</p> <p>74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p> <p>...</p> <p>(2)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p> <p>(3)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p> <p>(4)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compensation from third parties for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at were impaired, lost or given up that is included in profit or loss.</p>	<p>대해 제3자에게서 수취한 보상금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p>
<p>74A If not presented separately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e financial statements shall also disclose:</p> <p>(a) the amount of compensation from third parties for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at were impaired, lost or given up that is included in profit or loss; and</p> <p>(b) the amounts of proceeds and cost included in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0A that relate to items produced that are not an output of the entity's ordinary activities, and which line item(s)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include(s) such proceeds and cost.</p>	<p>74A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p> <p>(1)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액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p> <p>(2) 생산된 재화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와 관련된 금액으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 그리고 그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별 항목</p>
<p>Transitional provisions</p> <p>80D <u>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u>, issued in May 2020, amended paragraphs 17 and 74 and added paragraphs 20A and 74A.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retrospectively, but only to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p>	<p>경과규정</p> <p>80D 2020년 ○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와 7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u>that are brought to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them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period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n which the entity first applies the amendments. The entity shall recognise the cumulative effect of initially applying the amendments as an adjustment to the opening balance of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at the beginning of that earliest period presented</u></p>	<p><u>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이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u></p>
<p>Effective date</p> <p>81N <u>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u>, issued in May 2020, amended paragraphs 17 and 74, and added paragraphs 20A, 74A and 80D.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p>	<p>시행일</p> <p>81N 2020년 9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 74A 및 8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p>
<p>Approval by the Board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issued in May 2020</p>	<p>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p>
<p>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which amended</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IAS 16, was approved for issue by all 14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p> <p>Hans Hoogervorst Chairman Suzanne Lloyd Vice-Chair Nick Anderson Tadeu Cendon Martin Edelmann Françoise Flores Gary Kabureck Jianqiao Lu Darrel Scott Thomas Scott Chungwoo Suh Rika Suzuki Ann Tarca Mary Tokar</p>	<p>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2020.9.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p> <p>회계기준위원회 위원:</p> <p>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p>

결론도출근거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After paragraph BC16, new headings and paragraphs BC16A - BC16R are added. After paragraph BC36A,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C36B - BC36D are added.</p>	<p>문단 BC16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16A ~BC16R을 추가했다. BC36A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36B~BC36D를 추가했다.</p>
<p>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2020 amendments)</p> <p>Background</p> <p>BC16A Before the 2020 amendments, paragraph 17(e) specified that directly attributable costs included the costs of testing whether an asset was functioning properly, after deducting the net proceeds from selling items produced while bringing the asset to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it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The Board received a request asking whether:</p> <p>(a) the proceeds specified in paragraph 17(e) related only to items produced while testing; and</p> <p>(b) an entity was required to deduct from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y such proceeds</p>	<p>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2020년 개정)</p> <p>배경</p> <p>BC16A 2020년 개정 전 문단 17(5)에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되,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순매각금액을 차감하도록 명시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p> <p>(1) 문단 17(5)에서 규정한 매각금액이 오직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에만 관련되는 것인지</p> <p>(2) 시험원가를 초과하는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that exceeded the costs of testing.</p>	
<p>BC16B The Board's research indicated that different entities had applied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17(e) differently. Some entities deducted only proceeds from selling items produced while testing; others deducted the proceeds of all sales until an asset was in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it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ie available for use). For some entities, the proceeds deducted from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could be significant and could exceed the costs of testing.</p>	<p>BC16B IASB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별로 문단 17(5)의 요구사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오직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 따른 매각금액만을 차감하였고, 다른 기업들은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사용 가능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매각금액을 차감하였다. 일부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된 매각금액은 유의적이고 시험원가를 초과할 수도 있다.</p>
<p>Recognising proceeds and related cost in profit or loss</p> <p>BC16C After considering the findings in paragraph BC16B, the Board decided to amend paragraph 17 to prohibit an entity from deducting from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e proceeds from selling items produced before that asset is available for use (proceeds before intended use).</p>	<p>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당기손익 인식</p> <p>BC16C 문단 BC16B에서 언급하는 조사결과를 고려한 후,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하였다.</p>
<p>BC16D In the Board's view, the amendments will improve financial</p>	<p>BC16D IASB는 이 개정내용으로 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의도한</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reporting.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meet the definition of income and expenses in the <i>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i>. Those items of income and expenses reflect an entity's performance for the period and they should, therefore,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p>	<p>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 항목들은 일정 기간의 기업 성과를 반영하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p>
<p>BC16E The previous requirement to offset proceeds against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reduced the usefulness of financial statements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is because the previous requirement resulted in an entity including amounts that did not faithfully represent:</p> <p>(a) its performance. Offsetting proceeds against the cost of an asset understates an entity's revenue (or income) in the period. Moreover, doing so could also have a pervasive and long-term effect on an entity's performance when the asset has a long useful life. Offsetting proceeds decreased the depreciable amount of such an asset and, consequently, reduced the depreciation charge recognised</p>	<p>BC16E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와 상계하도록 한 종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종전의 요구사항은 다음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p> <p>(1) 기업의 성과. 매각금액과 자산의 원가를 상계하면 일정 기간의 수익(revenue)[또는 이익(income)]이 과소계상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긴 경우에 기업의 성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그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금액이 감소된다.</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as an expense over the asset's useful life.</p> <p>(b)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Offsetting proceeds could result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understating its cost. This, in turn, could reduc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metrics, such as return on assets, that use the asset's carrying amount.</p>	<p>(2) 유형자산의 원가.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원가를 과소 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써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지표(예: 자산수익률)의 유용성이 감소될 수 있다.</p>
<p>BC16F The Board considered suggestions that recognising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in profit or loss <u>might not</u>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ose holding this view suggested that such sales proceeds—and the related margin—may have little predictive value because:</p> <p>(a) the sales proceeds are generally non-recurring and are not necessarily an 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 and</p> <p>(b) the cost of items produced would not include depreciation of the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because depreciation of that asset begins when it is available for use.</p>	<p>BC16F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판매금액[그리고 관련된 이익 (margin)]이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 <p>(1) 이 판매금액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이며 반드시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은 아니다.</p> <p>(2) 생산된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에 시작되기 때문이다.</p>
<p>BC16G In the Board's view, however, the fact that the proceeds may have</p>	<p>BC16G 그러나 IASB는 그 매각금액이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little predictive value was not a compelling argument for excluding them from profit or loss—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includes other items of income or expenses that may have little predictive value but the inclusion of which nonetheless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Recognising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in profit or loss will result in entities reporting amounts that more faithfully represent their performance and financial position. It will also have confirmatory value about an entity’s performanc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 74A(b) will highlight such proceeds and cost fo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ee paragraphs BC16L - BC16M).</p>	<p>이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강력한 논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손익계산서는,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밖의 수익이나 비용 항목들을 포함한다.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나타내는 금액을 보고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확인가치를 가질 것이다. 문단 74A(2)의 공시 요구사항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문단 BC16L~BC16M 참조).</p>
<p>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p> <p>BC16H 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Board proposed no requirements o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before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s available for use. A number of respondents to the Board’s draft amendments suggested that the Board develop such requirements.</p>	<p>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p> <p>BC16H 외부검토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다.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They said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could require extensive judgement, which in turn could result in differences in how entities measure that cost. Respondents' views differed on how prescriptive any requirements should be – some suggested the Board develop only high-level principles while others suggested providing detailed application guidance.</p>	<p>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견제출자들은 요구사항을 얼마나 자세히 기술하여야 하느냐에 견해를 달리했다. 일부는 IASB가 높은 수준에서 원칙만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세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였다.</p>
<p>BC16I After considering this feedback, the Board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apply IAS 2 <i>Inventories</i> i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The Board made this decision because:</p> <p>(a) IAS 2 sets out a framework for measuring cost without being overly prescriptive; and</p> <p>(b) an entity would already be required to apply IAS 2 in measuring cost if the entity were to determine that the sale of items produced is an output of its ordinary activities – in this case, the items produced would meet IAS 2's definition of inventories. It would be useful to apply the same requirements to the cost of items produc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ale of those</p>	<p>BC16I 이러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IAS 2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p> <p>(1) IAS 2는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가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정하고 있다.</p> <p>(2) 만약 기업이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미 원가를 측정할 때 IAS 2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된 재화는 IAS 2의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결과인지와 무관하게, 생산된 재화의 원가에 대하여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items is an 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p>	
<p>BC16J In addition,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judgement involved i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is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judgements already required when applying IAS 2 and other IFRS Standards in measuring cost, in particular for assets that take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to get ready for their intended use (for example, measuring the cost of abnormal amounts of wasted materials and labour, allocating costs to joint products or measuring the cost of operations incidental to the construction or developmen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p>	<p>BC16J 또한,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예: 낭비된 비정상 재료원가와 노무원가의 측정, 결합제품에 대한 배분,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에 부수적인 영업 관련 원가의 측정)하는 데 수반되는 판단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IAS 2와 그 밖의 IFRS를 적용할 때 이미 요구되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p>
<p>BC16K The Board acknowledged the amendments might result in implementation costs for some entities. However, the Board concluded that a requirement to measure the cost of items produced applying IAS 2 would not impose costs that outweigh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p>	<p>BC16K IASB는 몇몇 기업의 경우, 이 개정 내용을 새로 적용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IAS 2를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보다 더 많은 원가를 부담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p>
<p>Presentation and disclosure</p> <p>BC16L The Board developed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74A(b) to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information about the sale of items that are not an</p>	<p>표시와 공시</p> <p>BC16L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단 74A(2)의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aid information that enables them to identify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to understand how those proceeds and related cost affect an entity's performance, would be useful.</p>	<p>은 그들로 하여금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금액을 식별하게 하고, 이러한 매각 금액과 관련 원가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p>
<p>BC16M The Board decided not to develop similar requirements for sales of items that are an 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 because the requirements of IFRS 15 <i>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i> and IAS 2 would apply to the proceeds from such sales and related cost.</p>	<p>BC16M IASB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IFRS 15와 IAS 2의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러한 판매에서 생기는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해서는 유사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p>
<p>BC16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could necessitate the use of estimates and judgement. However, the Board decided not to add disclosure requirements in this respect because other IFRS Standards such as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already requir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estimates and judgements.</p>	<p>BC16N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정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IAS 1을 비롯하여 다른 IFRS에서 이미 추정과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IASB는 이와 관련하여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p>
<p>BC16O The Board also decided not to develop specific presentation requirements for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because IAS 1 already includes relevant requirements, for example on:</p>	<p>BC16O IAS 1이 이미 예를 들면 다음에 대한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는 않기로 하였다.</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a) the offsetting of income and expenses; and</p> <p>(b) the presentation of income and expenses as separate line items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p>	<p>(1) 수익과 비용의 상계</p> <p>(2)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수익과 비용의 표시</p>
<p>Available for use and the meaning of 'testing'</p> <p>BC16P Paragraph 20 requires an entity to determine when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s available for use. The Board was informed of differences in how entities make that determination, and considered suggestions to clarify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Some of those making this suggestion said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might indicate that an asset is already available for use before it is determined to be so. In their view, such a clarification would reduce the amount of proceeds being deducted from the cost of an asset than had previously been the case and, thus, would address the matter identified in paragraph BC16B without changing how those proceeds are recognised.</p>	<p>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시험'의 의미</p> <p>BC16P 문단 20에서는 유형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기업이 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고, 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사항을 고려하였다. 일부 기업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유의적 매각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자산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매각금액이 감소되어 매각금액의 인식방법의 변동 없이 문단 BC16B에서 식별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p>
<p>BC16Q The Board decided not to amend IAS 16 to clarify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Such an amendment would not be narrow in scope—it might affect the</p>	<p>BC16Q IASB는 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6을 개정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좁은 범위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유형자산의 측정에 영</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measurement of many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d additional research would be required to assess potential unintended consequences. Furthermore, the Board had obtained no evidence that differences in how entities determine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could lead to material differences in the entities' financial statements</p>	<p>향을 미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IASB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p>
<p>BC16R Nonetheless, the Board decided to clarify the meaning of 'testing' in paragraph 17, noting that such a clarification might help an entity in determining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The Board concluded that when testing whether an asset is functioning properly, an entity assesses the technical and physical performance of the asset. The assessment of functioning properly is not an assessmen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n asset, such as assessing whether the asset has achieved the level of operating margin initially anticipated by management.</p> <p>...</p>	<p>BC16R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문단 17의 '시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업이 유형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명확화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할 때 기업은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을 평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유형자산이 경영자가 최초로 예상한 영업이익수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이 자산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p> <p>...</p>
<p>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2020 amendments)</p>	<p>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2020년 개정)</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BC36B The 2020 amendments are expected mainly to affect only a few industries, such as mining and petrochemicals. The Board therefore considered the need, if any, for transition requirements beyond those in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p>	<p>BC36B 2020년 개정은 주로 광업 및 석유화학과 같은 몇몇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IASB는 IAS 8에 불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p>
<p>BC36C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expected benefits of retrospectively applying the amendments in accordance with IAS 8 might be outweighed by the costs of doing so—in particular, an affected entity might find it difficult and costly to apply the amendments retrospectively to assets made available for use many years ago. In the Board’s view, the transition requirements in paragraph 80D promote consistency in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for all periods presented, but limit the number of assets an entity is required to reassess on first applying the amendments.</p>	<p>BC36C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여러 해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자산에 소급하여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IASB는 문단 80D의 경과규정은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일관성을 증진시키지만,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의 수를 제한한다고 보았다.</p>
<p>BC36D The Board decided not to provide transition requirements for first-time adopters of IFRS Standards because:</p> <p>(a) IFRS 1 <i>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 provides deemed cost exemptions for items of property,</p>	<p>BC36D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을 위한 경과규정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p> <p>(1) IFRS 1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제공한다. 면제 규정은 최초채택기업이 IAS 16을 참조하지 않고 유형자</p>

Amendments to IAS 16	제1016호 개정안
<p>plant and equipment. These exemptions allow a first-time adopter to measure such assets without reference to IAS 16.</p> <p>(b) if a first-time adopter does not apply those deemed cost exemptions, it would apply all the requirements in IAS 16 retrospectively. The Board concluded that there would be little benefit in providing first-time adopters with an exception or exemption relating to only one aspect of the requirements in IAS 16.</p> <p>...</p>	<p>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2) 최초채택기업이 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IA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IAS 16의 요구사항 중 한 가지 측면에만 관련되는 예외 규정이나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효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p>...</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